

의안번호	2212948
의 퇴 인	차지호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4.
추계번호	25B426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13(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) 신설	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(제1항) 1. 선거·여론형성 등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 2. 정치·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조장 3. 허위정보·혐오표현·차별 조장 4. 아동·청소년 보호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 5. 불법정보 유통 조장 및 신체적·정신적 위해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를 둘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의13(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시스템적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독립검증 절차 마련(안 제44조의13 신설)

- 개정안은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선거·여론형성 등 민주적 절차, 정치·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조장 등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¹⁾을 평가(이하 “시스템적 위험평가”)하고 완화계획을 수립·이행하여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²⁾에 보고하도록 하며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스템적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범위 및 사업자수, 시스템적 위험평가의 세부항목 및 항목별 검증방법, 검증 참여 외부전문가의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시스템적 위험평가의 세부 항목·기준, 독립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천알고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파악 및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2025	2026(안)
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(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개발)	패널데이터 조사에 근거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이슈에 대한 중·장기 정책 수립 지원 및 법·제도 개선방안 마련 -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이용 행태를 데이터로 축적해 추천알고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편향·피해사례를 사전 파악하고 정책적 예방책 마련 등	96	96

자료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
1) 안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6. “시스템적 위험”이란 추천알고리즘이 사회·경제·문화·정치 등 공익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.

2) 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